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 보육수요 다변화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
- 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선, 운영상 규제 완화를 통해 보육 서비스 질 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개정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이다. 보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보호자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보육사업안내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내부 검토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개정 내용을 확정하였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개정을 통해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아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반별 재원아동 수의 최소 기준 완화, ▲원장의 보육교사 검임 특례 적용의 기한을 각각 2027년 2월,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 야간연장 어린이집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②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24시간 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24시간 어린이집 : 24시간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인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추가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보육에 해당하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제 보육을 포함해 5가지 보육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 시간제 보육 :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④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 연장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별 재원아동이 3세반은 8명, 4세 이상반은 11명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 3세반은 6명, 4세 이상반은 8명 이상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반영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환경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원화 기준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7년 2월까지 연장한다.

⑤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특례가 적용되어, 정원이 21~39인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의 원장도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최근 영유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특례의 적용 기간을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2026년 2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교육부(<http://www.moe.go.kr>) > 정책 > 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

【붙임】 202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 신규대비표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성근 (044-203-7202)
		담당자	사무관	원대한 (044-203-7212)
			주무관	안혁재 (044-203-7213)

붙임

202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 신규대비표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 폐지> <24시간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구관	김현지 (044-203-7147)
		주무관	강노을 (044-203-71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완화>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사무관	이혜빈 (044-203-7209)
		주무관	김인애 (044-203-7210)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기준 완화 연장>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서기관	이채영 (044-203-7227)
		주무관	이기현 (044-203-7226)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연장>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사무관	김규환 (044-203-7169)
		주무관	고희은 (044-203-7170)

□ 야간연장 보육 지원 시간 한도 폐지

개정 전	개정 후
나.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한도 : 월 60시간	나.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한도 : 월 60시간(~'26.2.) ※ 2026년 3월부터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가능 대상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나. 24시간 어린이집 2)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신설)	나. 24시간 어린이집 2)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 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단,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정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6) 운영 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 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6) 운영 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 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및 <u>시간제 보육</u>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 유아반 인건비 지원 최소 기준 완화 적용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5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6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단, 정원 21~39인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6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단, 정원 21~39인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6년 1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